

직원 인사 규정

제정 : 1998. 03. 01.
 개정 : 2015. 05. 08.
 개정 : 2017. 03. 10.
 개정 : 2022. 08. 05.
 개정 : 2023. 08. 04.

담당 : 사무관리팀(02-950-5421)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직원의 구분)	제4조(용어의 정의)
제5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제6조(인사위원회 설치)	제7조(삭제)	제8조(삭제)
제9조(삭제)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2조의2(삭제)	제13조(임용의 원칙)	제14조(임용권자)	제15조(직원의 자격)
제16조(결격사유)	제17조(임용시기)	제18조(임용절차)	제19조(구비서류)
제20조(신규채용)	제21조(수습임용)	제22조(응시연령)	제23조(채용시험의 공고)
제24조(전형방법)	제25조(경력환산)	제26조(직위관리)	제27조(전보)
제28조(전보의 시기)	제29조(승진)	제30조(특별 승진)	제31조(승진의 제한)
제32조(승진 소요연수)	제33조(직원의 보직)	제34조(보직변경)	제35조(승급)
제36조(특별 승급)	제37조(승급의 보류)	제38조(승급 상한 호봉)	제39조(교육훈련)
제40조(포상)	제41조(포상의 결정 및 방법)	제42조(포상자의 특전)	제43조(신분보장의 원칙)
제44조(당연 퇴직)	제45조(직권면직)	제46조(휴직)	제47조(휴직기간)
제48조(휴직의 효력)	제49조(휴직직원의 처우)	제50조(직위해제 및 해임)	제51조(정년)
제52조(징계)	제53조(징계사유)	제54조(징계의 종류)	제55조(징계의 효력)
제60조(징계의 절차)	제61조(징계사유의 시효)	제62조(재심청구)	제63조(급여)
제64조(복무)	제65조(인사기록)	제66조(서류보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정관 제83조 내지 제84조의2 및 제87조에 의거하여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2.06)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단, 계약직 직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2014.02.20.)(개정2023.08.04)

② 직원인사에 관하여 법령,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및 제규정에 특별

히 규정된 것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구분) ① 직원은 일반직, 계약직(2014.02.20개정)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직은 국장(일반직2급), 부장(일반직3급), 차장(일반직4급), 과장(일반직5급), 대리(일반직6급), 계장(일반직7급), 주임(일반직8급), 직원(일반직9급, 계약직)으로 한다.(개정2010.11.09)(개정2014.02.20)(개정2015.02.06)

③ 삭제(삭제 2015. 2. 6)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임용: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직위: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승진: 하위직급으로부터 상위직급으로 올라감을 말한다.
5. 삭제(개정17.03.10)
6. 전보: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7. 강임: 상위직급으로부터 하위 직급으로 내려감을 말한다.
8. 직위해제: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 하는 행위를 말한다.
9. 면직: 직원의 신분을 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복직: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1. 정직: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을 말한다.
12. 파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직권에 의하여 직원의 신분을 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직원의 임용은 그 일자리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급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하여 추서할 경우.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 해제하는 경우.
3. 직원이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제2장 인사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 설치) ① 직원인사관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 05. 08)

제7조(삭제) (개정 2015. 05. 08)

제8조(삭제) (개정 2015. 05. 08)

제9조(삭제) (개정 2015. 05. 08)

제10조(삭제) (개정 2015. 05. 08)

제11조(삭제) (개정 2015. 05. 08)

제12조(삭제) (개정 2015. 05. 08)

제12조의2(삭제) (개정 2015. 05. 08)

제3장 임 용

제13조(임용의 원칙)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평가에 의하여 행한다.

제14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 이행한다.

제15조(직원의 자격)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임용될 직무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2015.2.6)(개정17.03.10)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본 대학의 신앙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자와 계약규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7조(임용시기) 직원은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임용절차) 직원의 임용 시에는 별지 1의 직원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신규채용과 승진의 경우에 한하고 승급, 전보, 휴직, 직위해제, 복직 및 기타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서로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9조(구비서류) 직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2015.2.6)

1. 이력서(소정서식, 사진첨부) 2통
2. 인사기록카드(소정서식, 사진첨부)
3. 신원진술서(소정서식, 사진첨부)

4. 학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1통
5. 경력증명서 1통
6. 삭제(23.08.04)
7. 삭제(23.08.04)
8. 삭제(23.08.04)
9. 건강 진단 결과서 1통(개정23.08.04)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20조(신규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 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성격상 경력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개정23.08.04.)

제21조(수습임용) 삭제(23.08.04.)

제22조(응시연령) 삭제(개정2010.11.09)

제23조(채용시험의 공고) 공개 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 예정인원, 시험의 방법, 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전형방법) ① 전형은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 및 실기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14.02.20.)(개정23.08.04)

② 서류전형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의 인사위원이 담당하며, 모집인원의 2배수 이상을 선발한다.

③ 면접은 서류전형에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23.08.04.)

④ 필기 및 실시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등의 내용으로 한다.(개정23.08.04.)

⑤ 면접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인사위원과 해당 전문분야의 교직원 약간 명으로 한다.(개정 2015.2.6)

⑥ 면접은 효율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되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모집분야에 대한 합당 여부
2. 경력
3. 개성과 품위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25조(경력환산) 삭제(개정2010.11.09)

제26조(직위관리)(2014.02.20개정)

제27조(전보) ① 직원의 전보는 업무 및 본인의 적성과 근무성적 평점을 참작하여 효율적인 인원 활용과 적재적소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전보는 동일 부서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정원의 변동 또는 특히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전보의 시기) 직원의 전보는 매년 2월 및 8월에 실시한다. 다만, 기구개편으로 인한 인원 조정과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행할 수 있다.

제29조(승진) ① 직원의 승진은 근무성적 평점, 표창 및 당해 각 부서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행한다.

② 승진은 매년 1회 5월 1일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2010.11.09)(개정17.03.10)

제30조(특별 승진)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본 대학교 발전에 특출한 공로가 있거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순직 또는 부상하였을 때에는 특별 승진을 할 수 있다.

제31조(승진의 제한) ①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직위해제와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직원근무평정규정에 의한 평가 성적이 불량한 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2010.11.09)

제32조(승진 소요연수)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 연한은 다음과 같다. (2014.02.20개정)

1. 9급에서 8급 3년
2. 8급에서 7급 3년
3. 7급에서 6급 3년
4. 6급에서 5급 3년
5. 5급에서 4급 4년
6. 4급에서 3급 5년
7. 3급에서 2급 5년 (개정2010.11.09)

② 제2항의 승진 소요기간에는 직위해제, 휴직 및 승진제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하였을 때의 그 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제33조(직원의 보직) ① 직원에 대하여 보직을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직원의 자격, 전공분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보직을 부여 할 수 있다.

② 삭제(개정 2015.2.6)

제34조(보직변경) 보직의 변경은 현직의 보직 발령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상 경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승급) 삭제(개정2010.11.09)

제36조(특별 승급) 삭제(개정2010.11.09)

제37조(승급의 보류) 삭제(개정2010.11.09)

제38조(승급 상한 호봉) 삭제(개정2010.11.09)

제4장 교 육

- 제39조(교육훈련)** ① 직원의 자질 향상과 근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담당 직무 수행상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② 일립행정본부장(또는 팀장)은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02.20)(개정 2022.08.05)
- ③ 교육훈련 성적은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인사관리에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포 상

제40조(포상)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포상을 한다.

1.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을 때.
2. 재해 기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한 공로가 있을 때.
3.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4. 학교행정 운영의 능률화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여 학교행정 운영의 개선에 현저한 실적이 있을 때.

제41조(포상의 결정 및 방법) ① 포상의 추천은 일립행정본부장(또는 팀장)이 행한다.(개정 2014.02.20)(개정 2022.08.05)

- ② 포상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③ 포상은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부상을 줄 수 있다.

제42조(포상자의 특전) 총장은 포상을 받은 자에게 그 정도에 따라 특별승급을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심의로 면책의 특권을 부여하고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제6장 신분보장

제43조(신분보장의 원칙)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및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기구 개편에 의한 폐직으로 감원될 때 또는 조건부로 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44조(당연 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전 제16조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될 때.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3. 본인이 퇴직을 희망 할 때.
4. 정년에 달하였을 때.
5.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한 신규 채용자.

제45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에 의한 면직을 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
2. 직무 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할 수 없

을 때.

제46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7.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6월까지의 병가기간이 경과하여도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8.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을 목적으로 휴직하게 된 때, 단,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한하여 가능.(개정14.02.20.)(개정15.2.6.)(개정23.08.04)

제47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6조 제1,5,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2014.02.20개정)
2.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기소된 날로부터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로 한다.
6. 제4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총장이 정한다.(2014.02.20개정)

제48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의 직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6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이 15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④ 제46조 제7호, 8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2014.02.20개정)

제49조(휴직직원의 처우) ① 휴직기간 중 보수지급은 보수규정에 따른다.(2014.02.20개정)

제50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 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명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51조(정년) 직원의 직종별 정년은 정관 제84조의2에 의한다.

제7장 징 계

제52조(징계) 징계 및 재심 청구는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의 정관을 따른다. 다만,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

제53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임용권자는 징계 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기타 본 대학교 제규정에 위반하여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상급자의 직무상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때.
3. 학교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 한 때.
4. 직무상 보안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6.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신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7.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의 행위를 한 때(신설23.08.04.)

제54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제55조(징계의 효력) ① 파면은 징계의결을 거쳐 직원의 신분을 해면시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60조(징계의 절차)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정관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63조의 3, 제64조, 제65조,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징계사유의 시효) 직원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2조(재심청구) ① 직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통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기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재심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중에서 3명, 직원 중에서 2명을 선임하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⑤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보 수

제63조(급여)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장 복 무

제64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장 인사기록

제65조(인사기록) 직원의 인사에 관한 일체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은 본 대학교 사무관리팀에서 한다.

제66조(서류보관) 전조의 인사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인사서류를 비치 보관한다.

- 1. 임용에 관한 서류
- 2. 포상에 관한 서류
- 3. 징계에 관한 서류
- 4.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 5.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8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직 원 임 용 계 약 서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이사장 _____(이하 “갑”이라 한다)은 _____(이하 “을”이라 한다)과 직원임용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임용직위) "갑"은 "을"을 한국성서대학교 _____로 임용한다.
2. (임용일자) "을"의 임용개시일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로 한다.(개정17.03.09)
3. (보수) "을"의 보수는 등급별 연봉제로 하며, “갑”의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별도로 정한다.
4. (의무) "을"은 임용기간 중 한국성대학교 직원으로서 첨부된 임용조건과 학내 제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을"이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이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적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이사장 (인)

"을" : (주 소)
(성 명) (인)

임 용 조 건

1. 갑의 권리와 의무

갑은 한국성서대학교의 신앙신조, 설립이념, 교육목표, 대학헌장, 학칙 및 제반 규정을 이행하며, 을의 진급, 보직 및 업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며, 을이 본 임용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책임을 물어 해약할 수 있다.(개정17.03.10)

2. 을(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

1) 직원은 ①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신앙고백(별첨1)을 본인의 신앙고백으로 확인하며(서명:_____), ② 설립목적과 이념 그리고 교육목표(별첨2)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고(서명:_____), ③ 대학헌장, 학칙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할 뿐 아니라 위의 ① ② ③항을 직원으로서의 근무 시 효과적으로 반영한다.

2) 직원은 총장, 소속 분야 및 기타 상급자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지시에 응할 의무가 있다.

3) 직원은 복무규정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해야 한다. 단, 대학교의 총장의 재가를 받아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대학교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4) 직원은 개학기간 중에는 휴가를 할 수 없다. 병가, 방학기간 중의 휴가 또는 출장은 교직원복무규정에 따르며, 사무관리팀장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직원은 대학교의 지침에 따라 학생들을 일반적으로 지도할 뿐 아니라 특별히 위임받은 학생들을 책임 있게 지도해야 한다. 직원은 또 각종 대학교의 행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학생이나 학부형 기타 외부인들이 대학교에 관한 타당한 상담 또는 문의 시 친절하게 상담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학생들을 오도했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징계위원회가 결정하는 징계사항에 순복해야 한다.

6) 직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7) 직원은 대학교에서 매일 아침(오전 8시 30분)에 드리는 교직원기도회와 학기 중 매일 주야간에 드리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총장이 소집하는 직원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본인은 위 임용조건에 동의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학교의 제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일자:

성명: _____(인)

<별첨1>

우리의 신앙고백

한 국 성 서 대 학 교

나는 신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과 인생은 하나님의 직접 행동으로 창조된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육과 동정녀 탄생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얻으신 승리의 속죄와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과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육체의 부활과 그의 재림하실 것과 성령으로 인한 중생의 신생과 하나님의 은혜로써 주어진 선물인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고백

이 신앙고백서는 사단법인 성서선교회의 신조인 우리의 신앙고백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서 본 선교회 산하의 모든 교회의 교역자, 성도 및 모든 교육기관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엄숙히 서약하는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

1.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의 성서전체가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출17:14, 34:27, 민33:2, 사8:1, 30:8, 34:16, 렘25:13, 30:2, 36:27, 32, 겔24:1,2, 단12:4, 하2:2) 이상은 성서의 영감에 대한 구약의 증명이요 신약도 역시 다음과 같이 증명하고 있다.(마15:4, 행1:16, 히1:5, 3:7, 4:3, 5:6, 7:21, 고전2:11-14, 14:37, 고후13:3, 살전2:13, 딤후3:16).

2. 성부로서의 하나님

피조물인 인생은 창조주이신 유일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계시인 성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에 관한 지극히 적은 부분을 알 뿐이다. 성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현현하여 계신다. 성부라는 이름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제일위이심을 표시하는 동시에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요(고전8:6, 엡3:14-15, 히2:9, 골1:17) 전 인류의 생명의 시작이시며 축복의 근원이실 뿐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인 참된 기독교자들의 아버지로서 계시되었다.(마5:45, 6:6-15, 요1:14, 18, 5:17-26, 8:54, 14:12-13, 롬8:15, 요일1:3)

3. 성자로서의 하나님

성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서 삼위일체의 제이위이시다. 그는 우주의 창조주이시요, 우주의 보존자이시며 빛이시요, 생명이시며 전 인류의 구속주이시다. (요1:20-30, 롬9:5, 빌2:6, 요1서5:20) 그러므로 그에게는 신적 이름과(렘23:5-6, 사9:6) 신적 속성이 부여되었다.

(사9:6, 마18:20, 요2:24-25, 21:7, 빌3:21, 계1:8) 따라서 그의 행하시는 능력의 역사는 신적이였다.(마 9:2-7, 눅10:22, 요3:35, 엡1:22, 빌3:21, 골1:17, 히1:10-12) 그러기에 그에게는 신적 영광이 부여 되었다.(요5:22, 25-30, 엡1:3-14, 계1:9-20)

4. 성령으로서의 하나님

성령도 성부와 성자와 똑 같이 인격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시요,(요14:16-17, 26, 15:26, 16:7-15, 롬8:26, 엡4:30, 행16:7, 고전12:11, 창1:2, 6:3, 행8:29, 13:2, 고전2:10 -11, 눅 1:35, 4:14,

행10:38, 롬8:11, 15:13, 고전2:4)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롬8:9, 갈4:6) 그리스도에 의하여 파송되었으나(요16:7) 그리스도와 동일하시며(고전2:10-11, 고후3:17) 또한 신적 이름과(행5:3-4, 고전3:10, 딤후3:16) 신적 완성이 부여되어 있다.

(시139:7-10, 사40:13, 15, 12:11, 히9:14) 그리고 그에게 부여된 특별한 사업은 곧 창조와 구속의 완성이다. (창 1:3, 욥26:13, 시33:6) 성령은 이 업무에 완성을 위하여 인간의 심령에 감동감화의 역사를 통하여(출28:3, 31:2-3, 35:35, 3:22, 요3:34, 고전2:13, 벧후1:21) 교회를 건설하사 그 안에 임재하시며 인도하신다(엡1:22-23, 고전3:16, 12:4, 요14:26, 16:13-14, 행5:32, 히 10:15, 요일 2:27).

5. 인간론

인생의 기원

우주 전체 즉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로써 창조하셨으나 인생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흙을 빚어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인생은 절대로 진화의 결실이 아니다.

(창1:26-27, 2:7, 18-19, 21-25, 5:1, 9:6, 고전11:7, 골3:10)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셨으니 이는 인생의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생의 타락

인류의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의 범죄는 그 후손인 전 인류에게 전가되었고 전 인류는 그 죄의 댓가로서 사망 아래 있게 되었다.(롬5:12-19, 엡2:3) 따라서 인간은 악을 행하는 것밖에 선이라고는 행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인간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이다.(요5:42, 롬7:18-23, 8:7, 고후 7:1, 엡4:18, 딤후3:2,4, 딤후1:15, 히3:12) 따라서 인간은 그 자신이 자기 죄의 사슬을 벗어나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 되고 만 것이다.(요1:13, 34, 3:5, 6:44, 15:4,5, 롬7:18, 24, 8:7, 8:1, 고전 2:14, 고후3:5, 엡2:1, 8-10, 히11:6) 그리고 이 죄는 보편적이요(왕상8:46, 시143:2, 잠 20:9, 전7:20, 롬3:1-12, 갈3:22, 약3:2, 요1서1:8,10) 선천적이니(시151:5, 욥14:4, 요 3:6) 이로 인하여 인생은 영원히 유죄 선고 아래 있는 것이다.

(롬5:12-14, 요3:5, 엡2:3, 요일5:12) 이상은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다.

6.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완전한 인생으로 탄생하셨다. (마1:20, 8:29, 26:63, 눅1:34-35, 요1:14, 18, 49,

3:16, 11:27, 롬8:3, 갈4:4, 요일4:2) 그러기에 성육신하신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 시로되 죄는 없으시다.(고후5:21, 빌2:5-8)

7.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전 생애는 탄생하시던 그 순간부터 형극의 길이요 고난의 생애였다. 그의 고난은 오직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자신을 대속적 번제물로 봉헌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험악한 갈보리 도상이었다.(신21:23, 사53: 마4:1-11, 눅22:28, 요1:29, 12:27, 행13:38-39, 롬3:26, 5:6-8, 고후5:21, 갈3:13, 히2:18, 4:15, 5:7-9, 9:28, 벧전2:24, 3:18)

8.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영육의 완전 재결합과 동시에 그의 인간성 안에 있는 본래의 순수성과 완전성이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칭의와 중생과 영생의 보증이며 참된 기독교자들의 미래의 부활을 약속하신 처음 익은 열매이다.(막16:9-11,

14-18, 눅24:31, 36, 39, 요20:11-29, 21:7, 행 1:3, 9-11, 2:23-24, 3:13-15, 7:55-56, 롬 4:24-25, 6:4-5, 9, 8:11, 34, 고전6:14, 15:1-6, 20-22, 고후4:10-11, 13:5, 갈2:20, 엡2:6-8, 골1:27, 2:10,12, 살전4:14, 빌3:10, 히1:3, 4:14, 7:25, 10:10-14)

9.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부활의 보증적 완성이다. 예수의 지상에서의 모든 고난의 생애는 그의 승천에 의하여 하늘나라에 넘쳐흐르는 모든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셨으니 이는 최고의 권능과 영광의 자리이다.(마26:64, 요14:2-3, 17:24, 행2:33-36 5:31, 엡1:20-22, 벧전3:22, 히10:12, 계 3:21, 22:1)

10. 재림 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초림은 사람들이 보기에 지극히 미미하였다. 그러나 그의 재림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요 세상에 날던 모든 인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요 전 인류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마25:31-34, 눅3:17, 요5:22, 27, 행1:11, 10:42, 17:31, 롬2:16, 14:9, 고전1:7-10, 고후5:10, 딤후4:1, 딤후2:13, 약5:9, 계 1:7)

11.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최후의 명령이다. 여기에는 ① 예수의 명령과 ② 참된 기독교자의 사명과 ③ 세계의 복음화 등 삼대 명제가 함유되어 있다.(마28:18-19, 막16:15, 눅24:47, 요17:18, 행1:8, 5:32, 고후5:18-19)

12.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참된 기독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교회는 그 몸이 되었으며 참된 기독교자들은 그 지체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파쟁이나 교권 투쟁이 있을 수 없으며 또한 분열될 수도 없으니 이는 한 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회에 속한 참된 기독교자들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사랑과 평화로써 신령한 열매를 많이 맺기에 힘쓸 것뿐이다.(롬12:4-5, 고전 1:10-13, 12:12-27, 갈5:13-15, 엡1:22-23, 2:19-22, 4:3-6, 빌 2:1-5)

<별첨2>

설립 목적과 이념

한국성서대학교는 기독교가 자유주의적이요, 인본주의적이며, 세속적이요, 유물주의적인 흐름에 합류하는 경향이 있음을 목도하면서 성서에 입각한 기독교 신앙의 근본주의 교리를 교수하여 복음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초교파적 지도자를 양성하려고 한다. 한국성서대학교는 성서가 가르치는 인류의 영적 구원에 필요한 성서의 심오한 진리와 그 광범위한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여 그리스도적인 인격을 도야하고 건전한 사상을 심어 국가 사회의 발전과 전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영적 구원을 위한 선구자 즉 땅에 떨어져 썩어서 새로운 싹을 내는 한 알의 밀과 같은 역군을 양성하려고 한다.

교육 목표

1.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복종과 봉사적 실천생활을 통하여 생동하는 관계를 가지게 하려고,
2.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봉사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하려고,
3.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영원한 소망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하려고,
4. 성서가 영감에 의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감사와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로서의 건전한 인격자를 찾으려고,
5.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영적으로 또한 지적으로 손색이 없는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6. 성서적인 근본주의 신학에 견고히 서서 모든 이단적인 사이비 기독교 학설에 미혹되거나 타협됨이 없이 순수한 성서 중심의 보수신앙을 수호하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고 순수한 복음의 등대가 될 수 있는 역군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7. 유명한 사람이나 어떠한 교파나 교단이나 재물 따위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서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따라 복음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8. 주어진 직장에서 능동적이요 효율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되어 봉사하는 지도자를 산출하려고,
9. 성서에 입각한 순수한 복음 진리로써 정신무장을 하고 예수의 발자국을 따라 조국의 지역사회에서 신음하는 모든 겨레들을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조국의 백년대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척자를 찾으려고,
10.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전 세계 인류의 심령에 평화를 수립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소명받은 한 알의 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본교의 교육목표이다.